

-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차량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 건의안 -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박진형 의원 외 18명

나. 의안번호 : 제720호

다. 제출일자 : 2015. 9. 3

라. 회부일자 : 2015. 9. 7

### 2. 주문

- 현행 「도로교통법」에 적용 받는 긴급자동차인 소방차·구급차 등은 신속한 이동이 요구되어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및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등 특례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공무 특성에 의해 긴급하게 출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공소가 제기되어 민·형사의 책임을 저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현재 긴급한 업무수행을 위해 출동하는 긴급자동차 사고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별도의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긴급자동차의 출동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벌의 부담을 줄여주고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함

### 3. 제안이유

- 화재 등 긴급상황시 출동하는 소방차·구급차·혈액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는 분·초를 다투는 업무의 특성상 즉시 현장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적용 받는 긴급자동차 우선 통행 등 특례규정에 의해 긴급자동차 출동시 관련법을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허용되지만, 사고가 나게 되면 법규위반 사고 책임의 사유가 되어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일반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고 사고에 대한 민·형사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업무 수행시 장애요소가 되는 곤란한 상황에 있음
- 하지만 현행 법령 미비로 인해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끼고, 응급출동 관련 공무수행 의지가 위축되고 있는 바, 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긴급출동에 따른 형사상 책임 최소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개정 건의하는 것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나. 기타사항: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원안 동의

## 5.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국토교통위원회

나. 정 부 :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 6.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김동수)

### 가. 개요

- 동 개정건의안은 소방자동차, 구조·구급용 자동차, 혈액공급용 자동차 또는 경찰용 자동차(이하 “긴급자동차”라 함)의 운전자가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해 출동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현행법 상 일반 운전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귀결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의 업무 수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면제코자 「교통사고 특례법」 일부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 나. 긴급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한 특례 사항 및 관련 입법 동향

- 현행 「도로교통법」은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및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비롯한 다수 규정에서 긴급자동차에 대해서 신호 준수 의무, 속도제한 등 여러 제한 및 의무에 대한 특례를 인정<sup>1)</sup>하고 있음

1)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하지만, 현행 교통처리특례법에 따라 정해진 “11대 중과실 교통사고”<sup>2)</sup>의 경우 긴급업무를 수행하는 긴급자동차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사고발생시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촉시키고 있음
- 국회에서도 이러한 처벌규정을 개선하고자 '13~'14년에 걸쳐 의원 발의를 통해 법령개정을 시도하였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소방자동차 출동 중 운전자 면책규정」 신설을 위한 개정건의를 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한 입법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하였음<sup>3)</sup>

※ 참고 : 긴급자동차의 긴급업무 수행시 발생한 교통사고 처벌 개선 입법 발의동향

의원명	발의연도	개정법령	내용
조정식(민) 국회의원	2013.2.	교통사고 특례법	- 긴급한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는 반의사 불벌죄로 봄 - 단, 횡단보도,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음주 측정거부에 한해 제외함
진선미(민) 국회의원	2013.3.	교통사고 특례법	- 긴급한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 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였어도 공소를 제 기할 수 없음
홍철호(새) 국회의원	2014.12.	도로 교통법	-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형과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대방이 소를 제기 한 경우 민사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이종필(새) 시의원	2013.10.	교통사고 특례법 개정건의	- 「소방자동차 출동 중 운전자 면책규정」 신설을 위한 개정건의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2) 「교통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는 아래 각주 참조)

1. 신호위반 등 2. 중앙선침범 등 3. 과속 4. 앞지르기·끼어들기 5. 철길건널목 6. 횡단보도 7. 무면허 8. 음주(약물)운전 9. 보도침범 10. 추락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2013. 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다. 긴급자동차 차량의 업무상 과실에 따른 형사처벌 면제에 대한 필요성 여부**

- 최근 5년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 총 164건<sup>4)</sup> 중 공소 제기된 건은 11건으로 10건은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의 사유로 종결처리 되고 1건은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어 실질적으로 사고발생에 따른 형사처벌 사례는 극히 적으나

현행 법령 체계 내에서는 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 책임 유무 및 이에 대한 불이익이 긴급차량 운전자에게 귀속될 소지가 있는 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참고 : 최근 5년간 소방차 교통사고 발생현황**

① 교통사고 발생현황 : 총 164건					
구 분 연 도	계	출 동 구 분			
		화 재	구 조	구 급	기 타
계	164	37	13	84	30
2015.9.30	39	6	3	23	7
2014년	43	8	5	22	8
2013년	14	1	1	12	0
2012년	20	9	1	9	1
2011년	26	8	2	11	5
2010년	22	5	1	7	9

  

② 공소제기 건수 : 총 11건				
구 분 연 도	계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구약식
2014년	-	-	-	-
2013년	-	-	-	-
2012년	7	3	3	1(벌금100만원)
2011년	2	2	-	-
2010년	1	1	-	-

**※ 구약식(벌금100만원) 건 사고개요**  
 - '12. 4. 19(목) 마포소방서 소속 소방펌프차, 화재진압차 출동 중 마포구 상암삼거리에서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전치 20주 중상)

4) 안전지원과-26661(2015.12.10.) 첨부자료

- 이와 더불어, 최근 서울시가 소방차량 운전자의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일부 감면시켜 주기 위해 소방차 운전원에 대한 운전자보험 가입<sup>5)</sup>을 추진한 바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방차 등의 긴급출동에 따른 사고 발생시 운전자에 대한 형사상 책임 최소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관련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건의안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및 소방재난본부 등은 동 건의안에 대해 원안 동의 의견을 제출<sup>6)</sup>하였음

---

5)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보도자료(2015.6.30. 조간용)

6) 안전지원과-26661(2015.12.10.), 교통운영과-24253(2015.12.11.)